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1
------	------

2013. 7. 4.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4월 11일

나. 제안자 : 유청 의원(찬성자 13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2013년 7월 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 요지

- 「상위법 개정과 기구개편 사항 등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 주 요 내 용

-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지역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임원임면 보고, 감사의 추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업무(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 업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규정이 변경된 위임사무의 삭제와 인용조문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별표 1〕〔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개정)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사무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임원임면 보고 등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규정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주관부서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나.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 위임사무 신설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 ‘12.1.16)됨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협동조합 설립, 정관변경, 합병 및 분할, 해산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관리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위임사무 >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신설)	사회적경제과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56조 ○ 같은법 제57조 ○ 같은법 제119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구청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서울시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및 수리현황을 보면, '13년 3월말 기준으로 233건이 접수되어 185건(월평균 46건/일평균 2.3건)이 수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보제공부터 설립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회계, 운영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접수 및 수리 등'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조 없이는 증가 예상되는 협동조합 사무¹⁾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자치구 위임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 25개 구청 중 8개 구청(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업무량 과중에 따른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사무 위임을 반대

1) 서울시의 '협동조합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확대하고 경제규모를 지역내 총생산(GRDP) 5% 규모인 14조 3,700여억 원까지 늘릴 계획임.

하거나, 제도 정착이후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시행('12.8.15)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으로 규정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위임사무 >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신설)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u>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u> <u>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u> <u>마. 감사의 추천</u> <u>바. 자산취득보고의 접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구청장

- 동 위임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의견(25개 구청에서 동의)을 수렴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라.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2.2.17)에 따른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등, 모두 11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 사무위임조례에 사무 내용을 삭제는 것으로 입법개정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임.

<참고>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사무

주관부서	관련 사무명	관련법령	사유
문화예술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무 중 동자와 부동산 양도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2.17 시행)
공공디자인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무 전부 삭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11.3.29 시행)
보건의료정책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에 관한 사무 전부 삭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개정 ('13.1.4 시행)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전부 삭제	「약사법」 제35조	「약사법」 일부개정('13.11 시행)
보건의료정책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삭제	「약사법」 제38조	「약사법」 일부개정('12.82 시행)
보건의료정책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삭제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1.12.8 시행)
버스정책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무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2.8.2 시행)
자연상태과	입목 등록에 관한 사무 삭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8.11 시행)
산지방재과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중 원인자 부담 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가 삭제됨	「사방사업법」 제19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12.1.15 시행)
도시안전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관한 사무 중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등 삭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26조, 제35조 및 제36조, 같은법 제44조 등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3.2.22 시행)
건축기획과	공항 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예상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에 관한 사무가「항공법」에서 삭제됨	「항공법」 제107조제3항	「항공법」 일부개정('10.9.23 시행)

마.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아동복지법」의 개정·시행('13.1.23)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근거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 >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아동청소년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구청장	아동청소년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21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시행('13.3.23)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임.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 >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환경과	1.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	구청장	친환경교통과	1.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구청장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3.2.2)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의 인용조문과 제명을 변경하는 것임.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 >

현 행				개 정 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신설)	5.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야생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구청장	자연생태과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같은법 제11조의2	구청장

- 「도로법」이 개정·시행('13.1.1)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임.

<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 >

현 행				개 정 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48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46조	구청장

-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시행('13.1.1)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근거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 >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물재생센터소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물재생센터소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하수도사용조례」 제9조	물재생센터소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물재생센터소장

바. 위임사무명 및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화

-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무에 대해 수입기관을 보다 구체화하고, 「승강기시설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임사무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임.
- 이는 현행 자치구에 위임된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무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무는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

입체교차·지하차도 등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무는 ‘도로 사업소장’에게 각각 지정하려는 것임.

- 이는 사무의 수임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로표지 및 설치 및 관리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확화 >

현행				개정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교통운 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신설) (신설)		구청장	교통운영 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 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 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삭제) 구청장 도로 사업 소장

- 한편, 「승강기시설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는 기존에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나, 승강기의 사후관리, 설치신고, 변경등록, 유지관리업의 등록 등 승강기의 유지보수업체의 위반사항은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승강기의 자체점검, 중대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고보고 의무 등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이는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확화 >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법 제28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같은법 제28조	구청장

사.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2012.9.28)에 따른 실·본부·국, 과·담당관의 부서명칭 등 조직개편 사항을 금번 사무위임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문화디자인산업과	문화산업과
생활경제과	민생경제과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버스관리과	버스정책과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실
도로행정과	도시안전과

<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의 주간부서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사무명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한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사업 3.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사무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제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생활환경과	친환경교통과	1.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1. 사방업무에 관한 사무
도로행정과	도로계획과	1.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
주택공급과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2. 관리자의 지정·보고, 관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청소년 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감 사 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감사담당관	1.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조사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 나. 6급이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 (징계의결권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상수도 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 대학교 총 장

경제진흥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경제정책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경제정책과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구청장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 같은법 제33조	
	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6조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7조제2항	
	2.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3.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조제2항	
	나. 신고필증 발급	○ 같은법 제73조의5제3항	
	다. 취소	○ 같은법 제73조의6	
	4.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108조	
	5.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시정명령 등	○ 「전기공사업법」 제27조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경제정책과	<p>6.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p> <p>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p> <p>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 style="padding-left: 20px;">(1) 제작업</p> <p style="padding-left: 20px;">(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p> <p>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p> <p>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p> <p style="padding-left: 20px;">(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p> <p style="padding-left: 20px;">(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p> <p style="padding-left: 20px;">(3) 수시(수리)검사</p> <p>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p> <p>바. 보고 및 검사 등</p> <p>사. 개선명령</p> <p>아. 부정계량기의 처리</p> <p>자. 청 문</p> <p>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법 제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5조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41조 ○ 같은법 제38조 	<p>품질시험소장</p> <p>품질시험소장</p> <p>품질시험소장</p> <p style="padding-left: 20px;">구청장</p> <p>품질시험소장</p> <p style="padding-left: 20px;">구청장</p> <p>품질시험소장</p> <p>품질시험소장</p> <p style="padding-left: 20px;">구청장</p> <p>품질시험소장</p> <p style="padding-left: 20px;">구청장</p> <p>품질시험소장</p> <p style="padding-left: 20px;">구청장</p> <p>품질시험소장</p> <p style="padding-left: 20px;">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제작업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5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경제정책과	7.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나.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민생경제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법 제8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및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제36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8조제4항 ○ 같은법 제9조제3항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30조	
민생경제과	3. 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다. 검사 등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마. 실태조사 등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 같은법 제3조의 3, 제5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구청장 구청장
사회적경제과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발급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56조 ○ 같은법 제57조 ○ 같은법 제119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81조 ○ 같은법 제98조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구청장
보건의료정책과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같은법 제5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구청장
	4. 염 또는 합수제조 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 「염관리법」 제3조제1항, 제23조, 제24조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4조의6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 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법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 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시행령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버스정책과	<p>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p> <p>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p> <p>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위반 내용란 중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0호·제31호·제34호·제40호·제41호 및 제5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p> <p>14.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p> <p>자.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p> <p>차. 압류등록의 처리</p> <p>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p> <p>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p> <p>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p> <p>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p> <p>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13조제8항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 같은법 제2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p>구청장</p> <p>구청장</p>
<p>택시물류과</p>	<p>5.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p> <p>6.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7.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8.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p> <p>9.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10.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33호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11.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p> <p>12.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p> <p>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사용신고</p> <p>나. 임대허가</p> <p>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p> <p>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p> <p>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p>	<p>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p> <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p> <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p> <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p> <p>○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p> <p>○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p> <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p> <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택시물류과	<p>16.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 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p> <p>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p> <p>가. 등록</p> <p>나. 등록의 취소 등</p> <p>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p> <p>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p> <p>마. 사업개선명령</p>	<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p> <p>○ 같은법 제85조</p> <p>○ 같은법 제35조</p> <p>○ 같은법 제31조</p> <p>○ 같은법 제33조</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사. 법인의 합병인가 아. 양도·양수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5조, 제35조 ○ 같은법 제86조 ○ 같은법 제88조 ○ 같은법 제94조 ○ 같은법 16조제3항, 제35조 ○ 같은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구청장
주차계획과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38조제4항 ○ 같은법 제39조 ○ 같은법 제42조제3항 ○ 같은법 제43조제1항 ○ 같은법 제45조제1항 ○ 같은법 제94조 제2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제9호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구청장 도로 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구청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도시안전실 (물재생 시설과)	1.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계보전에관한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녹색에너지과	<p>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의 기준</p> <p>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p> <p>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p> <p>마.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p> <p>바.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 및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3.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p>	<p>○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p> <p>○ 같은법 제4조</p> <p>○ 같은법 제7조</p> <p>○ 같은법 제8조</p> <p>○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p> <p>○ 같은법 제38조 및 제40조, 제52조</p> <p>○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녹색에너지과	<p>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p> <p>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p> <p>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마. 과징금 부과·징수</p> <p>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p> <p>사. 보고 및 검사</p> <p>아. 청 문</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 같은법 제11조</p> <p>○ 같은법 제12조</p> <p>○ 같은법 제13조제3항</p> <p>○ 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호</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8조제1항</p> <p>○ 같은법 제40조</p> <p>○ 같은법 제49조제3항</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다. 과징금 부과·징수</p> <p>라. 보고 및 검사</p> <p>마. 청 문</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p> <p>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33조</p> <p>○ 같은법 제34조</p> <p>○ 같은법 제35조 제1항</p> <p>○ 같은법 제38조 제1항</p> <p>○ 같은법 제40조</p> <p>○ 같은법 제49조</p> <p>○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p> <p>○ 같은법 제40조 제4항</p> <p>○ 같은법 제66조 제1항</p> <p>○ 같은법 제78조 제4항제9호</p>	<p>구청장</p> <p>구청장</p>
녹색에너지과	<p>(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p>○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8조제4항 제12호</p> <p>○ 같은법 제75조</p>	구청장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가. 황합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합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p> <p>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p> <p>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사. 청 문</p> <p>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다. 등록취소시 청문</p> <p>라. 과태료 부과</p> <p>3. 방지시설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p> <p>○ 같은법 제42조</p> <p>○ 같은법 제43조</p> <p>○ 같은법 제44조</p> <p>○ 같은법 제45조제4항</p> <p>○ 같은법 제82조</p> <p>○ 같은법 제85조</p> <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p> <p>○ 같은법 제28조</p> <p>○ 같은법 제29조</p> <p>○ 같은법 제35조</p>	<p>구청장</p> <p>구청장</p>
기후대기과	<p>가. 방지시설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p> <p>나. 시공감리자의 지정</p> <p>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p>	<p>○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9조</p> <p>○ 같은법 제16조</p> <p>○ 같은법 제28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라. 등록취소시 청문</p> <p>마. 과태료 부과</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7조</p>	
친환경교통과	<p>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p> <p>○ 같은법 제70조</p> <p>○ 같은법 제94조</p> <p>○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p> <p>○ 같은법 제38조</p>	<p>구청장</p> <p>구청장</p>
자원순환과	<p>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p> <p>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p> <p>마.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p>	<p>○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3항</p> <p>○ 같은법 제37조</p> <p>○ 같은법 제39조</p> <p>○ 같은법 제48조</p> <p>○ 같은법 제68조</p> <p>○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p>	<p>구청장</p> <p>구청장</p>
자원순환과	<p>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p> <p>다. 과징금의 처분 등</p> <p>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p>	<p>○ 같은법 제23조</p> <p>○ 같은법 제26조</p> <p>○ 같은법 제27조부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p> <p>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p> <p>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p> <p>아. 청문의 실시</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3.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p> <p>라. 보고·검사 등</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4.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5.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제29조까지</p> <p>○ 같은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p> <p>○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p> <p>○ 같은법 제31조</p> <p>○ 같은법 제57조</p> <p>○ 같은법 제66조</p> <p>○ 「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 같은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p> <p>○ 같은법 제37조</p> <p>○ 같은법 제39조</p> <p>○ 같은법 제33조</p> <p>○ 같은법 제68조</p> <p>○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p>	<p>구청장</p> <p>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녹지사업소장</p> <p>구청장</p>
자원순환과	6.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p> <p>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p> <p>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p>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p>「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p>	
<p>생활환경과</p>	<p>1.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p> <p>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p> <p>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p> <p>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p> <p>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p>	<p>○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p> <p>○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p> <p>○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p> <p>○ 같은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p>	<p>구청장</p> <p>구청장</p>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저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8)	구청장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8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청문의 실시	○ 같은법 제27조	
문화예술과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33조	구청장
문화산업과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라. 폐쇄 및 수거 마. 청 문 바. 수수료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 같은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같은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0조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p>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임용권</p> <p>가. 의회내 전보</p> <p>나. 휴직에따른 복직</p> <p>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p> <p>라. 호봉승급</p> <p>2. 시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p> <p>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기능직 공무원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p>	<p>시의회 사무처장</p> <p>시의회 사무처장</p> <p>당해 보조기관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p>

	<p>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인사과	<p>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시설계획과	1.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구청장
	2. 사도 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 도시안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안전과	<p>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신규등록 등</p> <p>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p>	<p>○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 같은법 제5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 ○ 같은법 제13조 제5항 ○ 같은법 제13조 제7항 ○ 같은법 제13조 제8항	구청장
도시안전과	7.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나. 건설기계 폐기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 같은법 제34조의3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4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2. 도로의 신설 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46조	구청장
	4.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 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 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도로법」 제38조 ○ 같은법 제41조 ○ 같은법 제94조 ○ 같은법 제101조	구청장 구청장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하수도사용조례」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제8조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0조 ○ 「하수도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시설과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 「하수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하수도법」 제31조 ○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센터 소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5조 ○ 같은법 제15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52조 ○ 같은법 제3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38조 ○ 같은법 제68조 ○ 같은법 제69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72조 ○ 같은법 제90조 ○ 같은법 제47조 ○ 같은법 제48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77조 ○ 같은법 제78조 ○ 같은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 같은법 제89조 ○ 같은법 제91조 	구청장

	<p>저.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p> <p>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p> <p>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p> <p>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p> <p>다. 점용료 등의 감면</p> <p>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p> <p>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p> <p>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p>	<p>○ 같은법 제98조</p> <p>○ 같은법 제27조</p> <p>○ 같은법 제37조</p> <p>○ 같은법 제37조</p> <p>○ 같은법 제67조</p> <p>○ 같은법 제46조</p> <p>○ 같은법 부칙 제2조</p>	<p>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p> <p>구청장</p>
--	--	---	---------------------------------------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p>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p> <p>2.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p>	<p>○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p> <p>○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p>	<p>구청장</p> <p>구청장</p>
건축기획과	<p>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p> <p>나. 검 사</p> <p>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p>	<p>○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p> <p>○ 같은법 제21조</p> <p>○ 같은법 제28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제16조	구청장
	2. 관리자의 지정·보고, 관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2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 「주택법」 제56조제1항·제2항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주택법」 제57조제1항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 경 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2. 세종로, 시청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 같은법 제38조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 같은법 제41조, 제43조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항, 3항	구청장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및 그 고시는 제외)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자연생태과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사업의 시행(산림청 소관 제외)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라.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바. 수익의 교부 등 사. 사방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	○ 「사방사업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10조· 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소방서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p> <p>마. 과징금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9조, 제32조 ○ 같은법 제10조 	
예 방 과	<p>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다. 지위승계 신고</p> <p>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p> <p>마. 과징금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34조, 제44조 ○ 같은법 제35조 	소방서장
	<p>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다. 지위승계 신고</p> <p>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p> <p>마. 과징금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35조 	소방서장
	<p>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p>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9조 및 제1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 및 내용 변경 명령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퇴직 신고 수리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6조	
예 방 과	라. 안전성 확인 및 완성 검사 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바.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사.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아.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보고·검사 등 자.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청문 차.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18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8조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52조	구청장

사무위임 조례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위임사무				【별표1】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 <u>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u>제9조의 2 제1항 및 제2항</u> 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제9조, 제9조의 2 제1항 및 제2항</u>	구청장
	<u>가. 전통사찰 경내지에서</u> <u>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폐지</u>				<u>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u>		
	<u>나.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u>				<u>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u> <u>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u>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u>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u></p> <p>라. <u>전통사찰의 경내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제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마. 「<u>산지관리법</u>」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p>				<p>다. 「<u>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p> <p>(삭제)</p> <p>(삭제)</p>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행위</u>						
	<p>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나. 폐업 및 직권 말소</p> <p>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p> <p>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p> <p>마. 영업의 승계신고</p> <p>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p> <p>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p> <p>아. 직권취소</p> <p>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p> <p>○ 같은법 제17조</p> <p>○ 같은법 제18조</p> <p>○ 같은법 제21조</p> <p>○ 같은법 제22조</p> <p>○ 같은법 제23조</p> <p>○ 같은법 제24조</p> <p>○ 같은법 제25조</p> <p>○ 같은법 제26조</p>	구청장		<p>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나. 폐업 및 직권 말소</p> <p>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p> <p>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p> <p>마. 영업의 승계신고</p> <p>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p> <p>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p> <p>아. 직권취소</p> <p>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p> <p>○ 같은법 제17조</p> <p>○ 같은법 제18조</p> <p>○ 같은법 제21조</p> <p>○ 같은법 제22조</p> <p>○ 같은법 제23조</p> <p>○ 같은법 제24조</p> <p>○ 같은법 제25조</p> <p>○ 같은법 제26조</p>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3조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3조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 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구청장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 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1조 및 제33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0조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0조	
<u>도시경관과</u>	<u>1.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다음 사무</u> <u>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u> <u>나.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u>	○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 제3조의2	<u>구청장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소재지 구청장)</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문화디자인 산업과</u>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구청장	<u>문화산업과</u>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제10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제10조, 제11조 ○ 같은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 제11조 ○ 같은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 같은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 같은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라. 폐쇄 및 수거	○ 같은법 제29조			라. 폐쇄 및 수거	○ 같은법 제29조	
	마. 청 문	○ 같은법 제30조			마. 청 문	○ 같은법 제30조	
	바. 수수료	○ 같은법 제31조			바. 수수료	○ 같은법 제31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	
아동청소년 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구청장	아동청소년 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21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감사담당관	1.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조사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담당관	1.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조사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상수도사업본부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임사무				【별표1】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				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		
경제정책과	<p>나. 6급이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 (징계의결권 제외)</p> <p>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p> <p>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p> <p>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p>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p> <p>○ 같은법 제33조</p> <p>○ 같은법 제36조</p> <p>○ 같은법 제37조제2항</p>	구청장	경제정책과	<p>나. 6급이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 (징계의결권 제외)</p> <p>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p> <p>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p> <p>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p>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p> <p>○ 같은법 제33조</p> <p>○ 같은법 제36조</p> <p>○ 같은법 제37조제2항</p>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2.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2.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3.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3.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경제정책과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1항제3호, 같은조제2항	구청장	경제정책과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1항제3호, 같은조제2항	구청장
	나. 신고필증 발급	○ 같은법 제73조의 5제3항			나. 신고필증 발급	○ 같은법 제73조의 5제3항	
	다. 취소	○ 같은법 제73조의 6			다. 취소	○ 같은법 제73조의 6	
	4.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4.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108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108조	
5. 「전기공사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5. 「전기공사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시정명령 등	○ 「전기공사사업법」 제27조		가. 시정명령 등	○ 「전기공사사업법」 제27조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5조 ○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5조 ○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6.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1) 제작업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5조제2항 (같은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법 제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8조)	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6.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1) 제작업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 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 조제2항 (같은법 시행 령 제10조제2항) ○ 같은법 제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 조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3) 수시(수리)검사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3) 수시(수리)검사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경제정책과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청 문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5조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4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경제정책과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청 문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5조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4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1) 제작업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8조 ○ 같은법 제51조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1) 제작업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8조 ○ 같은법 제51조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7.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나.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구청장 구청장		7.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나.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구청장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p> <p>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p> <p>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u>생활경제과</u>	<p>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p> <p>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시설변경</p> <p>다. 등록증 재발급</p> <p>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p> <p>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법 제8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및 제36조 	<p>구청장</p> <p>구청장</p>	<u>민생경제과</u>	<p>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p> <p>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 록</p> <p>나. 시설변경</p> <p>다. 등록증 재발급</p> <p>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p> <p>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법 제8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및 제36조 	<p>구청장</p> <p>구청장</p>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8조제4항 ○ 같은법 제9조제3항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30조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8조제4항 ○ 같은법 제9조제3항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30조	
	<u>3. 동물용 의약품도매상허가 및 변경허가</u>	<u>○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u>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4. 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4. 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5.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5.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같은법 제3조의 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같은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같은법 제12조			다. 검사 등	○ 같은법 제12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같은법 제13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같은법 제13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마. 실태조사 등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마. 실태조사 등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사회적경제과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발급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56조 ○ 같은법 제57조 ○ 같은법 제119조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6조	구청장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구청장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구청장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같은법 제51조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구청장
	(신설)	(신설)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구청장
	(신설)	(신설)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구청장
	(신설)	(신설)		마. 감사의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구청장
	(신설)	(신설)		바. 자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구청장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보건정책과</u>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u>보건의료정책과</u>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같은법 제33조제5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같은법 제33조제5항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구청장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구청장
	<u>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구청장</u>		<u>(삭제)</u>		<u>(삭제)</u>
	<u>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u>	○ 「약사법」 제45조			<u>(삭제)</u>	<u>(삭제)</u>	
	<u>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 수리</u>	○ 같은법 제4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항			<u>(삭제)</u>	<u>(삭제)</u>	
<u>다. 보고와 검사 등</u>	○ 같은법 제69조		<u>(삭제)</u>	<u>(삭제)</u>			
<u>라. 업무개시명령 등</u>	○ 같은법 제70조		<u>(삭제)</u>	<u>(삭제)</u>			
<u>마. 폐기명령 등</u>	○ 같은법 제71조		<u>(삭제)</u>	<u>(삭제)</u>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바. 개수명령</u>	○ <u>같은법 제74조</u>			<u>(삭제)</u>	<u>(삭제)</u>	
	<u>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u>	○ <u>같은법 제76조, 제77조</u>		<u>(삭제)</u>	<u>(삭제)</u>		
	<u>아. 허가증 등의 갱신</u>	○ <u>같은법 제80조</u>		<u>(삭제)</u>	<u>(삭제)</u>		
	<u>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u>	○ <u>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u>		<u>(삭제)</u>	<u>(삭제)</u>		
	<u>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u>	○ <u>같은법 제81조</u>		<u>(삭제)</u>	<u>(삭제)</u>		
	<u>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u>	○ <u>같은법 제98조</u>		<u>(삭제)</u>	<u>(삭제)</u>		
	<u>보건정책과</u>	4.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구청장	<u>보건의료정책과</u>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 서 발행·교부	○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 서 발행·교부	○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 분에 대한 승인	○ 같은법 제1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 분에 대한 승인	○ 같은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 에 관한 보고서 수리	○ 같은법 제27조, 제29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 에 관한 보고서 수리	○ 같은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법 제41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 무보고 명령	○ 같은법 제42조, 제43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같은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 같은법 제44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 리 명령	○ 같은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 같은법 제45조			카. 청문의 실시	○ 같은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 육 실시	○ 같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같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u>보건정책과</u>	5.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법 제69조 ○ 같은법 제71조 ○ 같은법 제73조 ○ 같은법 제74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81조 ○ 같은법 제98조	구청장	<u>보건의료정책과</u>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법 제69조 ○ 같은법 제71조 ○ 같은법 제73조 ○ 같은법 제74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81조 ○ 같은법 제98조	구청장
	<u>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구청장		<u>(삭제)</u>		<u>(삭제)</u>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가. 등록 및 등록변경</u>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삭제)	(삭제)	
	<u>7.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 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구청장		(삭제)		(삭제)
	<u>가. 개설허가</u>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삭제)	(삭제)	
	<u>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 의 신고</u>	○ 같은법 제40조제2항			(삭제)	(삭제)	
	8.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u>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구청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8조, 제49조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8조, 제49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u>보건정책과</u>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u>보건의료정책과</u>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같은법 제51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같은법 제51조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법 제51조제3항 ○ 같은법 제51조제4항 ○ 같은법 제53조 ○ 같은법 제54조 ○ 같은법 제62조제2항	구청장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법 제51조제3항 ○ 같은법 제51조제4항 ○ 같은법 제53조 ○ 같은법 제54조 ○ 같은법 제62조제2항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식품안전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 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2조	구청장	식품안전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 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2조	구청장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제29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6조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제29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6조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구청장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구청장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구청장
	4. 염 또는 합수제조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등	○ 「염관리법」 제3조제1항, 제23조, 제24조	구청장		4. 염 또는 합수제조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등	○ 「염관리법」 제3조제1항, 제23조, 제24조	구청장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4조의6	구청장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4조의6	구청장
<u>버스관리과</u>	1.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	구청장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신설)</u>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u>버스정책과</u>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p> <p>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p> <p>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p>				<p>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p> <p>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p> <p>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p>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구청장
	5.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버스관리과</u>	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구청장	<u>버스정책과</u>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구청장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구청장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구청장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구청장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구청장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u>11.</u>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u>12.</u>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위반 내용란 중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0호·제31호·제34호·제40호·제41호 및 제5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u>13.</u>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 내용란 중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0호·제31호·제34호·제40호·제41호 및 제5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u>14.</u>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u>15.</u>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구청장
	2.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구청장		2.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택시물류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다. 등록의 거부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마. 변경등록의 처리 바. 이전등록의 처리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2항 ○ 같은법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제6항 ○ 같은법 제10조 ○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구청장	택시물류과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다. 등록의 거부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마. 변경등록의 처리 바. 이전등록의 처리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제18조제2항, ○ 같은법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제6항 ○ 같은법 제10조 ○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31조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31조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 같은법 제13조제6항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 같은법 제13조제6항		
	자.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 같은법 제13조제8항		자.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 같은법 제13조제8항		
	차. 압류등록의 처리	○ 같은법 제14조		차. 압류등록의 처리	○ 같은법 제14조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 같은법 제16조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 같은법 제16조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같은법 제28조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같은법 제28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임사무				【별표1】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택시물류과	<p>하.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이륜 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 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p> <p>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p>	<p>○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p>	구청장	택시물류과	<p>하.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이륜 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 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p> <p>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p>	<p>○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p>	구청장
	<p>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p>	구청장		<p>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p>	구청장
	<p>5. 일반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구청장		<p>5. 일반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다만,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와 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구청장
	<p>6.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 「자동차관리법」 제72조</p>	구청장		<p>6.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 「자동차관리법」 제72조</p>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7.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7.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8.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3호	구청장		8.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33호	구청장
	9.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10.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1.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구청장		11.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구청장
	12.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2.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택시물류과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구청장
	나. 임대허가	○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나. 임대허가	○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16.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16.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가. 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가. 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나. 등록의 취소 등	○ 같은법 제85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같은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같은법 제3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같은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같은법 제31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같은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같은법 제33조			마. 사업개선명령	○ 같은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같은법 제32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같은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같은법 제15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같은법 제15조, 제35조	
	차. 청문	○ 같은법 제86조			차. 청문	○ 같은법 제86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88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88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94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94조	
	파. 휴업·폐업의 신고	○ 같은법 16조제3항, 제35조			파. 휴업·폐업의 신고	○ 같은법 16조제3항, 제35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79조			하.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제38조제4항 ○ 같은법 제39조 ○ 같은법 제42조제3항 ○ 같은법 제43조제1항	구청장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제38조제4항 ○ 같은법 제39조 ○ 같은법 제42조제3항 ○ 같은법 제43조제1항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45조제1항 ○ <u>같은법 제94조 제2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u>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45조제1항 ○ <u>같은법 제94조 제2항 제9호</u>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신설) (신설)	○ 「도로법」 제57조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u>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u> 나. <u>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u>	○ 「도로법」 제57조, <u>같은법 시행령 제5조</u>	(삭제) 구청장 <u>도로사업 소장</u>
(신설)	2.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구청장 직속기관의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구청장 직속기관의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임명	제14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장, 사업소장		임명	제14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장, 사업소장
<u>환경정책과</u>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구청장	<u>녹색에너지과</u>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구청장
<u>환경정책과</u>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기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제4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	구청장	<u>녹색에너지과</u>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기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제4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바.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 및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아. 청 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38조 및 제40조, 제52조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 ○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제3항 ○ 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8조제1항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49조제3항	구청장		바.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 및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아. 청 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38조 및 제40조, 제52조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 ○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제3항 ○ 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8조제1항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49조제3항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 제38조 제1항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49조	구청장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33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 제38조 제1항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49조	구청장
<u>환경정책과</u>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 ○ 같은법 제40조 제4항	구청장	<u>녹색에너지과</u>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 ○ 같은법 제40조 제4항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66조 제1항 ○ 같은법 제78조 제4항제9호 ○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8조제4항 제12호 ○ 같은법 제75조 			<p>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66조 제1항 ○ 같은법 제78조 제4항제9호 ○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8조제4항 제12호 ○ 같은법 제75조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6.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계보전에관한법률」 제67	구청장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6.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계보전에관한법률」 제67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도시안전본부</u> (물재생 시설과)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u>도시안전실</u> (물재생 시설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같은법 제42조	구청장	기후대기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같은법 제42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p> <p>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p> <p>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사. 청 문</p>	<p>○ 같은법 제43조</p> <p>○ 같은법 제44조</p> <p>○ 같은법 제45조제4항</p> <p>○ 같은법 제82조</p> <p>○ 같은법 제85조</p>			<p>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p> <p>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p> <p>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사. 청 문</p>	<p>○ 같은법 제43조</p> <p>○ 같은법 제44조</p> <p>○ 같은법 제45조제4항</p> <p>○ 같은법 제82조</p> <p>○ 같은법 제85조</p>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다. 등록취소시 청문 라. 과태료 부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5조	구청장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다. 등록취소시 청문 라. 과태료 부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5조	구청장
	3. 방지사설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방지사설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라. 등록취소시 청문 마. 과태료 부과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9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7조	구청장		3. 방지사설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방지사설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라. 등록취소시 청문 마. 과태료 부과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9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7조	구청장
친환경교통과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구청장	친환경교통과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94조 			<p>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94조 	
자원순환과	<p>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p> <p>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항 ○ 같은법 제37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p>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p> <p>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3항 ○ 같은법 제37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집·운반업에 한함)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다. 과징금의 처분 등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같은법 제68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구청장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집·운반업에 한함)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다. 과징금의 처분 등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같은법 제68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원순환과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같은법 제31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같은법 제31조	구청장
	아. 청문의 실시	○ 같은법 제57조			아. 청문의 실시	○ 같은법 제5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6조	
	3.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같은법 제37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같은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39조			라.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같은법 제33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같은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8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8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4.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녹지사업소장		4.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녹지사업소장
	5.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5.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6.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6.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u>생활환경과</u>	<p>1.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금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u>소음·진동규제법</u>」 제36조</p> <p>○ 같은법 제38조</p>	구청장	<u>친환경교통과</u>	<p>1.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금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u>소음·진동관리법</u>」 제36조</p> <p>○ 같은법 제38조</p>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환경과	2.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0조	구청장	생활환경과	2.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0조	구청장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조 경 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녹지대, 자동차전 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조 경 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 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 종로·시청앞의 녹지대, 자 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 외)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조경과	2. 세종로, 시청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조경과	2. 세종로, 시청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 같은법 제38조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 같은법 제38조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 같은법 제41조, 제43조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 같은법 제41조, 제43조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할공원녹지사업소장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할공원녹지사업소장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한 사항</p> <p>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p>	<p>관한 법률」 제12조</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p>	구청장		<p>관한 사항</p> <p>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p> <p>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p>	<p>관한 법률」 제12조</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p>	구청장
자연생태과	<p><u>1. 방제명령 등</u></p> <p>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p> <p><u>3. 임목등록(변경) 및 관리</u></p>	<p>○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p>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p> <p>○ 「임목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자연생태과	<p><u>1. 방제명령 등</u></p> <p>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p> <p>(삭제)</p>	<p>○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3항</p>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p> <p>(삭제)</p>	<p>구청장</p> <p>구청장</p> <p>(삭제)</p>
(신설)	<u>4.</u>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u>산지방재과</u>	<u>1.</u>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연생태과	가. 사방사업의 시행(산림청 소관 제외)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라.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바. 수익의 교부 등 <u>사. 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u> <u>아. 사방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u>	○ 「사방사업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10조·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u>같은법 제19조</u>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무	가. 사방사업의 시행(산림청 소관 제외)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라.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바. 수익의 교부 등 <u>(삭제)</u> <u>사. 사방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u>	○ 「사방사업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10조·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u>(삭제)</u>	
<u>(신설)</u>	<u>5.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	○ <u>「야생동·식물보호법」</u>	구청장	<u>자연생태과</u>	<u>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	○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u>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임사무				【별표1】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u>제11조제2항</u>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u>제2항</u>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u>에 관한 법률</u>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u>제3항</u> ○ <u>같은법 제11조의2</u>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임용권 가. 의회내 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 명령 라. 호봉승급 2. 시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시의회 사무처장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 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임용권 가. 의회내 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 명령 라. 호봉승급 2. 시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시의회 사무처장 시의회 사무처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인사과	<p>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공무원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당해 보조기관의 장	인사과	<p>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공무원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p>	당해 보조기관의 장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과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과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p>		<p>한 규정」 별표2 제2호 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 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 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과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과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p>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4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4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임사무				【별표1】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48조	구청장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46조	구청장
도로행정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구청장	도시안전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 명령	○ 같은법 제11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 명령	○ 같은법 제11조		
<u>도로행정과</u>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u>도시안전과</u>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면허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나. 면허의 취소·정지	○ 같은법 제28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다. 신상변동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30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라. 면허증의 재발급	○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u>가.</u> 면허증의 재발급	○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마. 면허대장관리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u>나.</u> 면허대장관리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같은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u>다.</u>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같은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5.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행정과	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구청장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나.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수리 등	○ 같은법 제24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다. 매매용 건설기계 관리 등	○ 같은법 제25조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라. 사업등록 등의 통보	○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라. 사업등록 등의 통보	○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6.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6.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 같은법 제13조 제5항		나. 검사의 최고	○ 같은법 제13조 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같은법 제13조 제7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같은법 제13조 제7항		
	라. 기간연장	○ 같은법 제13조 제8항		라. 기간연장	○ 같은법 제13조 제8항		
	7.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u>도시안전과</u>	7.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 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0조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 함)	○ 「하수도법」 제30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 함)	○ 「하수도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 함)	○ 「하수도법」 제68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 함)	○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하수도사용조례」 제 <u>25조</u>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 함)	○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9조 「하수도사용조례」 <u>제28 조</u>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 정함)	○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사용조례」 <u>제9 조</u>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사용조례」 <u>제19 조</u>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시설과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 정함)	○ 「하수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시설과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 정함)	○ 「하수도법」 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 「하수도법」 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7. 방류수수질기준 <u>(차집관거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u>	○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u>(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u>	○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조 ○ 같은법 제15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52조	구청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조 ○ 같은법 제15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52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p> <p>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p>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3조</p> <p>○ 같은법 제36조</p> <p>○ 같은법 제38조</p> <p>○ 같은법 제68조</p> <p>○ 같은법 제69조</p>			<p>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p> <p>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p>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3조</p> <p>○ 같은법 제36조</p> <p>○ 같은법 제38조</p> <p>○ 같은법 제68조</p> <p>○ 같은법 제69조</p>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천관리과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p> <p>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p> <p>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72조 ○ 같은법 제90조 ○ 같은법 제47조 ○ 같은법 제48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77조 	구청장	하천관리과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p> <p>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p> <p>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72조 ○ 같은법 제90조 ○ 같은법 제47조 ○ 같은법 제48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77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며.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저.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 분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 같은법 제78조 ○ 같은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 같은법 제89조 ○ 같은법 제91조 ○ 같은법 제98조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 사업본부장)		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며.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저.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 분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 같은법 제78조 ○ 같은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 같은법 제89조 ○ 같은법 제91조 ○ 같은법 제98조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 사업본부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축탁 관리청 명칭 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67조 ○ 같은법 제46조 ○ 같은법 부칙 제2조 	구청장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축탁 관리청 명칭 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67조 ○ 같은법 제46조 ○ 같은법 부칙 제2조 	구청장
주택공급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24조 ○ 「주택법」 제56조제1항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24조 ○ 「주택법」 제56조제1항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2항 ○ 「주택법」 제57조제1항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2항 ○ 「주택법」 제57조제1항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u>(신설)</u>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청장	<u>주택정책과</u>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청장
	6.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 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나. 검 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법 제21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나. 검 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법 제21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 <u>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법 제2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 <u>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u> 」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같은법 제28조	
	2. 공항 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 「항공법」 제107조제3항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u>도시개발과</u>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u>도시계획과</u>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시설계획과	1.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구청장	시설계획과	1.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구청장
	2. 사도 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2. 사도 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예 방 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9조, 제32조 ○ 같은법 제10조 	소방서장	예 방 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9조, 제32조 ○ 같은법 제10조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소방서장
예 방 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34조, 제44조 ○ 같은법 제35조 	소방서장	예 방 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34조, 제44조 ○ 같은법 제35조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소방서장
예 방 과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소방서장	예 방 과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소방서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				사무		
	가. 등 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 등 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법 제16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법 제16조	
	다. 지위승계 신고	○ 같은법 제17조			다. 지위승계 신고	○ 같은법 제1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같은법 제19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같은법 제19조	
	마.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35조			마.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35조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가. 등 록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 무				【별표1】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및 제10조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및 제10조	
	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 및 내용 변경 명령	○ 같은법 제12조		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 및 내용 변경 명령	○ 같은법 제12조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퇴직 신고 수리	○ 같은법 제16조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퇴직 신고 수리	○ 같은법 제16조		
	라. 안전성 확인 및 완성 검사	○ 같은법 제18조		라. 안전성 확인 및 완성 검사	○ 같은법 제18조		
	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같은법 제19조		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같은법 제19조		
	바.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 같은법 제21조		바.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 같은법 제21조		
	사.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법 제29조		사.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법 제29조		
	아.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38조		아.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38조		
	자.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청문	○ 같은법 제40조		자.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청문	○ 같은법 제40조		

현행				개정안			
【별표1】 위 입 사무				【별표1】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차.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52조			차.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52조	